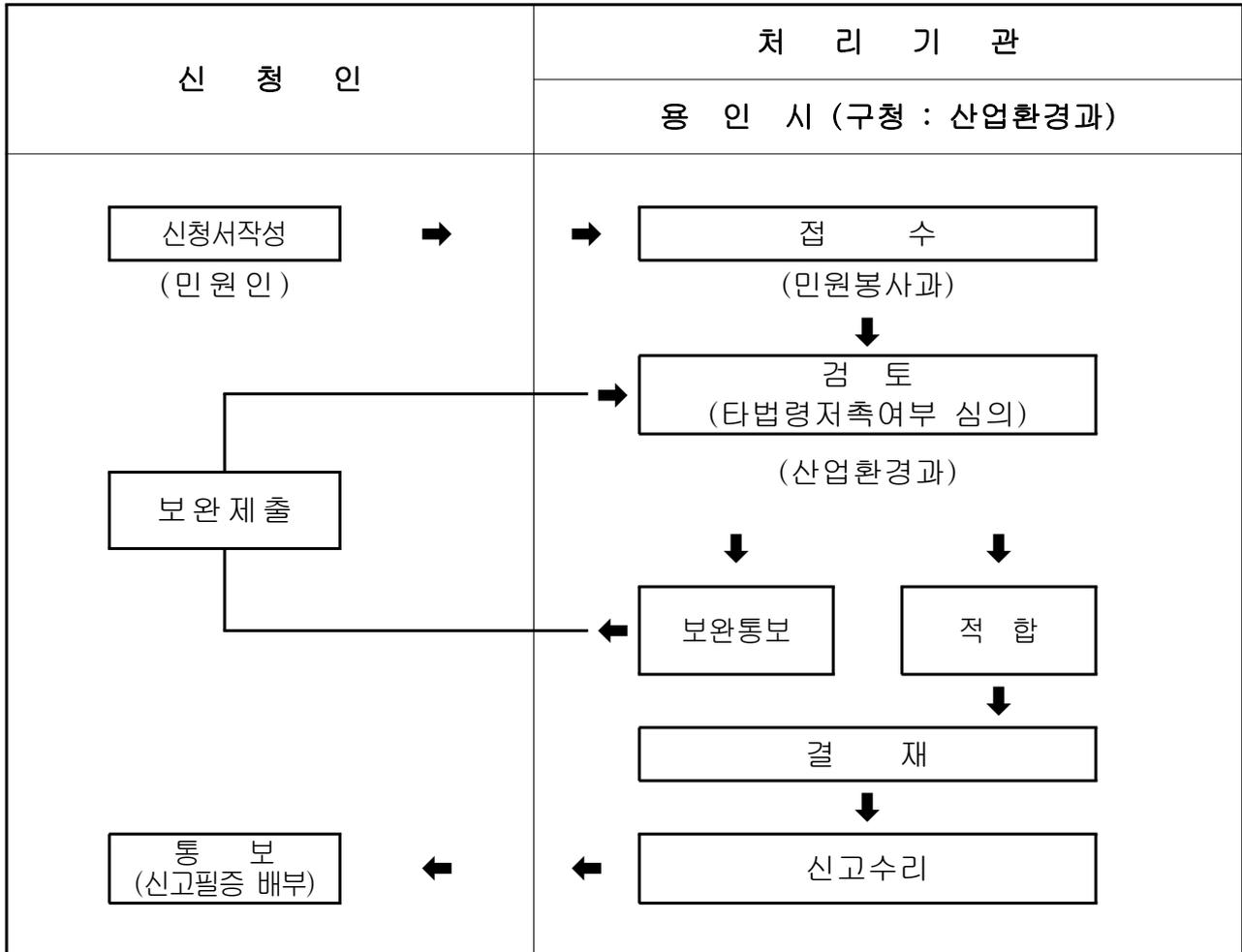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변경신고

□ 기본 사항

주 관 부 서	구청 산업환경과	업무담당자(☎)	031-324-5284	
처 리 기 간	10	관 련 부 서		
수 수 료	별지서식참조	시	도	중앙기관
면 허 세	동지역:12,000원 면지역:3,000원			
지역개발공채	-			
기 타				
근 거 법 규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구 비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 할 수 있는 서류 			

□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민원관련 검토사항

○ 배출시설 대상시설(시행규칙 제5조)

[별표 1]

소음·진동배출시설 (제2조관련)

1. 소음배출시설

가.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 (1) 10마력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의 경우에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 (2) 10마력이상의 송풍기
- (3) 10마력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을 제외한다)
- (4) 10마력이상의 금속절단기
- (5) 10마력이상의 유압식외의 프레스 및 30마력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를 제외한다.)
- (6) 10마력이상의 탈사기
- (7) 10마력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 (8) 30마력이상의 변속기
 - (9) 10마력이상의 기계체
 - (10) 20마력이상의 원심분리기<개정 2000.5.4>
 - (11) 50마력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프랜트의 혼합기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 (12) 50마력이상의 공작기계
 - (13) 30마력이상의 제분기<개정 2000.5.4>
 - (14) 20마력이상의 제재기
 - (15) 20마력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16) 50마력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 (17) 50마력이상의 압연기
 - (18) 30마력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 (19) 50마력이상의 성형기(압출 · 사출을 포함한다)
 - (20) 30마력이상의 주조기계(다이캐스팅기를 포함한다)
 - (21) 20마력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 (22) 20마력이상의 펌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하며, 소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을 제외한다)
 - (23) 30마력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선전기 및 합사 · 연사기를 포함한다)
 - (24) 30마력이상의 초지기
 - (25) 10마력이상의 연탄제조용 운전기
 - (26) 위의 (1) 내지 (25)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규모미만인 것들의 동력합계가 50마력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 지역 ·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사업장에 한한다)
- 비고 : 위 (26)에서 동력합계 50마력이상인 경우라 함은 마력기준이 10마력인 시설 등은 1, 20마력인 시설 등은 0.9, 30마력인 시설 등은 0.8, 50마력인 시설 등은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50마력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 · 기구

- (1) 100대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 (2) 4대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 (3) 자동제병기
- (4) 제관기계
- (5) 2대이상의 자동포장기
- (6) 40대이상의 직기(편기를 제외한다)
-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이상으로 한다)

다.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

-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이상의 단조기
- (2) 120kw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를 제외한다)
- (3) 5마력이상의 연삭기 2대이상
- (4) 석재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10마력이상에 한한다)

2.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에 한한다)

가. 20마력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을 제외한다)

나. 30마력이상의 분쇄기(과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다. 30마력이상의 단조기

라. 30마력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마. 30마력이상의 목재가공기계

바. 50마력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사. 50마력이상의 연탄제조용 운전기

아. 4대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비 고]

1.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kw \times (3\text{분의}4)$ 로 하며, 소숫점이하는 끊어버린다.
2.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기구의 마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배출시설설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 여부

1. 허가대상

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나.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
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라.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2. 신고대상

허가대상의 배출시설

3. 변경신고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30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 증설하는 경우

나..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 및 배출시설 폐쇄하는 경우

[비 고]

1. 배출시설의 규모는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총마력의 합계,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대수의 합계,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각각의 단위의 합계로 한다.
2. 하나의 사업장안에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설비율에 따라 제1호를 적용한다.

※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전에 나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

○ 입지관련 기타법규

부 서 명	관 련 법 명	비 고
건 축 과	- 건축법	
기업지원과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기 타	- 토지의 용도 및 목적 등에 따른 관련법	

□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소음진동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별표 4]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제6조관련)

1. 소음(대상소음도에서 다음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소음도가 50dB(A) 이하일 것

보 정 표		
항 목	내 용	보정치
충 격 음	충격음 성분이 있을 경우	+ 5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 간의 백분율	50%이상	0
	25%이상 50%미만	- 5
	12.5%이상 25%미만	-10
	12.5%미만	-15
시 간 별	(낮) 06:00~18:00	0
	(저녁) 18:00~24:00	+ 5
	(밤) 24:00~익일 06:00	+10
지 역 별	가.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0
	(2)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5
	(3)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15
	(4)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20
	나.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외의 지구	0
	다. 관리지역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 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미고시 지역	-10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0
	마.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 육법에 의한 학교 및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공공 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0

[비 고]

1. 관련시간대는 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으로 한다.
2. 지역별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2. 진동(대상진동레벨에서 다음 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진동레벨이 60dB(V)이하일 것)

보 정 표		
항 목	내 용	보정 치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 의 백분율	50%이상 25%이상 50%미만 25%미만	0 -5 -10
시 간 별	(낮) 06:00~22:00 (밤) 22:00~06:00	0 +5
지 역 별	가.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2)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나.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외의 지구 다. 관리지역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 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미 고시지역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마.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에 의한 학교및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공공도서 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0 -5 -10 -15 0 -5 -15 0

[비 고]

1. 관련시간대는 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으로 한다.
2. 지역별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허가 또는 신고번호		소음·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시설변경:5 일		기타: 즉시		
신 고 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 변경사유											
⑥ 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 경 내 용	시설 변경	⑦ 기 준 사 항					⑧ 변 경 사 항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dB(A)]	진동 [dB(V)]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dB(A)]	진동 [dB(V)]
	기타 변경										
<p>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 귀하</p>											
※ 구비서류						수수료					
						조례에 의함					
<p>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p> <p>2.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p>											